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 필요성 알기 ·

근로계약의 의의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조건 명시사항을 두고, 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규정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 필요성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을 경우 노사분쟁 및 재산상 불이익 발생의 소지
- 법적 의무 및 위반 시 벌칙 적용

·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교부방법과 근로계약 체결 대상자 알기 ·

근로계약서 명시사항 및 시기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 명시
- 근로조건 명시 시기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서면명시와 교부의무

-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며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

근로계약 체결 대상

- 근로계약서는 모든 근로자와 작성
- 근로계약은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회사에 출근하여 회사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모든 근로자와 체결

· 법적 기준 미달 근로계약에 대한 효력과 근로계약 내용 위반 시 효과 알기 ·

법상 최저기준을 미달한 근로계약의 효력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의 일부 무효와 보충적 효력 인정

근로계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 해제 가능
- 손해배상 청구 시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근로계약 해제 시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 지급



· 근로시간의 개념 파악 및 유형별 근로시간 판단하기 ·

근로시간의 의의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

유형별 근로시간 판단

대기시간	작업시간 도중 실제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하여 기다리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
교육시간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
행사시간	회사 행사가 소정근로시간 중에 행해지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시간 외에 또는 휴일에 실시되더라도 그 참석이 의무화된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미포함 및 임금 미지급

· 근로시간의 유형별 규정 알기 ·

근로시간의 유형

법정근로시간	일 단위 및 주 단위로 제한되는 기준 근로시간으로, 성인근로자를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주휴시간	1주 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부여
연장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
휴일근로시간	법정휴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시간
야간근로시간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하는 시간

· 특정사업 및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 및 적용 제외 규정 알기 ·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 간주근로시간제 :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 재량근로시간제 :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으로 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특정사업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 가능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적용 시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 휴식 부여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 제외

-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시간, 휴일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 또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배제



· 여섯 가지 휴(休)의 개념 및 차이점 알기 ·

휴일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 제공의무가 없는 날

휴무

-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면서 휴일이 아닌 날
-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휴일’과 ‘휴일이 아닌 날’로 구분할 수 있고, 이 중 휴무일은 후자에 해당

휴가

-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 대표적인 휴가제도 :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경우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

휴게

-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시간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 회사에서는 통상 점심시간(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 차원에서 부여하는 경우가 많음

휴직

- 근로자가 근로관계는 유지하되,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있는 상태

휴업

- 사용자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거부된 경우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일정 기간 정지된 것
- 대표적인 예 : 불황 등으로 인한 경영상 휴업, 원자재 부족으로 인한 작업 중단, 주문량 감소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조치 등

· 여섯 가지 휴(休)의 유·무급 기준 알기 ·

유·무급 기준

- 법률에서 유급으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 회사 내규에 유급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명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유급여부를 사전에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차유급휴가의 개념 및 휴가일수 부여방법 알기 ·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노동력 유지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설정된 휴가제도
- 4주(4주 미만 근로 시 그 기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시 연차유급휴가 비부여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 시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 부여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 시	연간 출근율 80% 이상 시	15일 부여
	연간 출근율 80% 미만 시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 부여
계속근로연수 3년 이상 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 가산
총 휴가일수(가산일수 포함)를 25일로 제한		

· 출근율 산정방법 알기 ·

출근율 산정방법

$$\text{출근율}(\%) = \frac{\text{연간 출근일수(근무일수)}}{\text{연간 소정근로일수}} \times 100$$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	결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출산전후휴가 기간, 유산·사산 휴가 기간육아휴직기간예비군훈련 기간민방위훈련 또는 동원 기간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연차유급휴가 기간생리휴가 기간부당해고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정직 기간정당성 없는 쟁의행위 기간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기간(예: 질병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알기 ·

임금의 의의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노동법에서는 각종 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도구적 수단으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등의 개념을 사용

임금의 판단 기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
사용자의 지급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또는 노동관행에 의해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임금 해당 여부 판단하기 ·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축의금, 조의금, 상병위로금 등 특별한 날에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상이 아니고 단순히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
실비변상적인 금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용품 구입비, 출장비 등 근로제공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변상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음 실비변상적인 성격이 강한 금품(연구비, 학생지도수당 등)도 일정액을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급여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음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됨 명목상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개인성과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판례에서는 근로자 개인의 본업인 영업활동 등 개인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실적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포상금 등 일정한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에 따라 계속하여 지급되는 개인성과급 성격의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음
집단성과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판례들이 개인성과 및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개인성과급을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회사 또는 부서 또는 팀 단위의 집단적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집단성과급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임금성을 부여하고 있는 경향이 강함
기타 법정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은 임금에 해당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에 대비하여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고자 법에서 부여하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재해보상금 또한 배상 또는 보상책임의 성격이 강하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평균임금의 개념과 산정사유 알기

평균임금의 의의

-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
-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함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최소한의 통상임금액 보장

평균임금 산정사유

- 퇴직금
- 재해보상금
- 휴업수당
- 감급의 제한
- 연차유급휴가수당
- 실업급여

평균임금 산정방법 알기

평균임금 산정

$$1\text{일 평균임금} = \frac{\text{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text{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법정제수당 등 포함
-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한 임금 뿐만 아니라, 아직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지급하기로 확정되어 있는 임금 모두 포함

평균임금 산정방법 알기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 및 포함 기간

제외 기간	포함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수습 사용 중인 기간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출산전후휴가 기간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육아휴직 기간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업무 외 부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귀 시 부당해고 기간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단,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미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근로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평상시 임금보다 적게 받은 기간 → 직위해제 기간, 휴직 기간,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 등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기간의 임금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포함시킴으로써 평균임금 액수가 낮아져 통상임금 하회 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 통상임금의 개념과 산정사유 알기 ·

통상임금의 의의

- 법에서 필요에 따라 설정한 도구적 개념으로써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임금의 객관적인 성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음

통상임금 산정사유

- | | |
|----------------|-----------------------|
| • 해고예고수당 | • 연차유급휴가수당 |
| • 휴업수당 | •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 육아휴직급여 |

·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알기 ·

통상임금 판단기준

- 통상임금 전원합의체판결(대법 2012다94643, 2013.12.18.)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
- ‘정기성’이란 미리 정해진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됨
-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함
-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그 지급 여부가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함

·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 여부 알기 ·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

- 통상임금은 법에서 정한 도구적 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 성질상 근로기준법 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음



· 최저임금의 개념과 적용 대상 및 결정기준 알기 ·

최저임금의 의의

-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수준의 임금

최저임금 적용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미적용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절차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 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 별도 지정 가능

· 최저임금 상회 여부 판단하기 ·

최저임금 판단방법

- 실제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기로 책정한 임금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지고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
-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구분하여 규정

·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및 감액 적용 범위 알기 ·

최저임금 적용 제외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최저임금 감액 적용

-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금액으로 함
- 단순노무종사자에 대하여는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임금 지급방법 알기 ·

통화지급의 원칙

- 임금은 국내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해야 하므로 현물, 주식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

직접지급의 원칙

-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대리인,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위법

전액지급의 원칙

-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 일부 공제 가능

정기지급의 원칙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

· 임금의 구성항목별로 지급기준 명확히 설정하기 ·

급여지급 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

- 급여지급 대상기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 급여지급 시 만근의 개념을 며칠로 보는가?
- 기본급 및 각종 제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산정하는가?
- 통상임금·평균임금에 해당하는가?
- 최저임금을 준수하는가?
- 과세 항목인가? 비과세 항목인가?
- 연차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 회사 내규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있는가?

· 근로자 입·퇴사 시 급여계산 방법 알기 ·

입·퇴사 시 급여계산

- 회사 규정에 따라 급여 항목별로 일할계산

$$\text{일할계산} = \text{근무일수} / \text{산정일수}$$

- 근무일수는 급여를 산정하는 대상기간 동안 근로한 일수를 의미하며, 월급제 근로자는 입사 후부터 대상기간의 마지막 날까지의 근속일수를 말함
-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력 기준으로 산정하고,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
- 퇴사자 급여계산 시 미사용연차 유무, 퇴직금 발생 유무 등 확인 및 건강보험 정산, 기타공제 유무, 소득세 정산 주의



· 시간급 통상임금 환산방법 ·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

- 별도로 환산할 필요가 없이 그 금액으로 함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

- 일급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눔
- 소정근로시간수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수이고, 근로자와 일급 금액이란 1일 단위로 지급하기로 정한 통상임금을 말함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

- 주급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로 나눔
- 주급 금액이란 1주를 단위로 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통상임금이고,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란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함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

-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로 나눔
- 월급 금액이란 1월을 단위로 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통상임금이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란 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을 말함
- 1년 동안의 평균 주수는 $365/7$ 일로 계산하고, 여기에 12로 나누면 1개월의 평균 수 약 4.34주가 됨

1개월을 초과하는 단위로 지급되는 금액

- 임금이 주급형태일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단위로 지급되는 금액을 해당 기간의 주수로 나눈 금액을 주급과 합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함
- 임금이 월급형태일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단위로 지급되는 금액을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월급과 합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함

도급 금액

- 임금산정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 임금 마감 기간)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눔

혼합임금

- 2가지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 시간급 금액은 각각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 시

- 주휴수당,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적용되지 않음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방법 알기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지급
-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 시 법정근로시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지급
- 탄력적근로시간제도 및 선택적근로시간제도 채택 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 없음
- 일·숙직의 경우처럼 노동밀도가 낮은 경우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 지급의무 없음
- 본래의 업무의 연장 또는 업무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로 평가되는 경우 가산수당 지급
- 통상의 근로일과 휴일 대체 시 원래의 휴일의 근무는 통상근로에 해당되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 없음
- 가산사유 중복 시 가산율도 중복 적용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 대신에 휴가 부여 가능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방법 알기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수 1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것이고, 여기에 1년 동안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수를 곱하면 미사용 휴가 전체에 대한 수당이 됨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일
소정근로시간



통상시급



연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수



· 국민연금 계산방법 및 부과원리 알기 ·

국민연금

- 보험료 산정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임
-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 시 기준소득월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결정하고,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

· 건강보험 계산방법 및 부과원리 알기 ·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 = 가입자의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 x 50%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정산은 수시정산, 퇴직정산, 연말정산이 있음

- 건강보험 퇴직정산

건강보험 퇴직정산 = 기납부보험료 – 실제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

· 고용보험 계산방법 및 부과원리 알기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

- 보험료 산정

월별보험료 =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 x 보험료율
일할계산 = 월평균보수 x (근무일수/월의 총일수) x 보험료율
일용근로자의 월별보험료 = 그 달에 지급받은 보수총액 x 보험료율



· 소득세의 개념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구성원리 알기 ·

소득세

- 소득세란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의 1년간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
-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해당 구간값의 소득세 공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원리

-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 수별로 정한 표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 가족 수 계산

-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계산
- 자녀세액공제 적용 시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로 계산

· 지방소득세의 개념 알기 ·

지방소득세

-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 개인지방소득세 중 근로소득에 관련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부과

· 연말정산의 개념과 산정방법 알기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시 연중의 소득이 확정되므로, 이때 원래 공제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여 기납부한 세금과의 차이를 정산하는 것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연간 합계액이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차액을 환급하고, 실제 세부담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추가 징수
- 연중에 사용한 비용(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에 대해 일정조건과 한도를 적용하여 세금 감면



· 단체협약 및 근로자 개별적 동의에 의한 임금공제 방법 알기 ·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공제

-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 공제 가능
- 취업규칙 등에 의한 공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대표적인 예로 노동조합의 조합비, 회사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공제 등이 있음

근로자 개별적 동의에 의한 임금공제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 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음
- 근로자의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 임금공제 사례 ·

조합비 일괄 공제

- 단체협약에 노동조합비를 일괄 공제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노동조합 규약에 근거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개별 조합원이 거부하더라도 공제 가능

대출금채권 공제

-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등 채권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 가능

계산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된 임금상계

- 초과 지급된 시기와 상계권 행사 시기가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상계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가능

임금반납

-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의해 임금 전액에 대한 처분권은 근로자 개인에게 있으므로 그 반납결정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명시적인 계약에 의해야 함
-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향후 회사의 반환책임은 발생하지 않음

임금삭감

-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되도록 삭감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에 대해서는 법정기준 미만으로 삭감할 수 없음



· 퇴직금의 개념 및 지급형태 알기 ·

퇴직금의 의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금품

퇴직금 지급 제도

- 퇴직금제도: 매년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회사 내에 임의로 적립하였다가 퇴직 시 지급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운용 주체가 사용자이며, 임금상승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고정되어 있고 퇴직금 운영 수익과 손실은 회사에 귀속되는 형태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운용 주체가 근로자이며, 퇴사자 퇴직금을 근로자의 계정에 적립해두면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운용을 지시하는 형태로 이익은 물론 손실에 대한 책임 역시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형태

· 퇴직금 계산방법 알기 ·

퇴직금 계산

- 1일치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퇴직금의 중간정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금지되어 있음

· 퇴직소득의 적용 범위 알기 ·

퇴직소득의 범위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 포함)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한 것에 대한 이자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종전 및 개정규정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알기 ·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 경과규정에 의한 퇴직소득 산출세액

(종전규정(2015년) 산출세액 × 적용비율) + (개정규정(2016년) 산출세액 × 적용비율)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종전방식 산출세액	80%	60%	40%	20%
개정방식 산출세액	20%	40%	60%	80%



· 근로관계 종료 사유 알기 ·

해고

-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 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통상해고·징계해고 및 사용자의 귀책에 의한 정리해고로 분류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사직

-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 사용자가 퇴직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 종료 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퇴직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합의해지

-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근로계약기간 만료

-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됨

당사자 소멸

-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고, 노무자도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자신을 대신해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함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소멸한 경우 근로관계 종료

정년 도래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소멸

· 근로관계 종료 시 유의사항 알기 ·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

근로관계 종료 사유의 명확화

- 근로관계 종료 시 퇴직사유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함
- 자발적인 퇴직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분쟁 발생에 대비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함

이직확인서 발급

- 근로자 이직 시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귀향여비 지급

-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함